



「동정리(소로2-81) 군계획도로 입체교차시설 설치사업」
특정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

2024. 7.



I . 일반사항

1. 개요

본 평가기준은 영동군에서 추진중인 『동정리(소로2-81) 군계획도로 입체교차시설 설치사업』의 특정공법(신기술·특허)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입니다.

2. 기본원칙

- 가. 평가대상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에 제출된 기술제안서로 한정합니다.
- 나.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하고,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.

3. 평가방법

가. 1차평가 : 정량적평가

- 1) 1차평가 항목에 대해서 사업 담당부서에서 평가를 실시하며, 본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자의 적합성 등을 판단합니다.

※ 1차평가(정량) 결과 상위 5개 업체만 2차평가(정성) 실시

나. 2차평가 : 정성적평가

- 1) 2차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.
- 2) 2차 평가는 시공성, 안전성, 유지관리, 경관성에 대해 정성적 평가를 시행 합니다.
- 3)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총평가점수에서 최고점 순으로 제안사를 최종 선정한다.
- 4) 총평점점수가 같을 경우 2차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정하고, 2차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.
- 5) 그 외 사항은 우리군 결정에 따르며,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.

다. 공통사항

- 1)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참여업체의 제안 공사비 변경은 불가 합니다.

- 2)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“0점” 처리합니다.
- 3) 공법평가서 및 기술제안서의 허위기재 및 오류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최종 선정된 신기술·공법이 상기에 해당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신기술·공법으로 채택합니다.

□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구 분	평가항목	평 가 방 법	배 점	비 고	
	합 계		100		
1차 정량적 (절대) 평가분야	소계		20	1차평가 (사업부서)	
	공사비	* 제안된 신기술·특허공법 평균대비 공사금액	10		
	경영상태	*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	10		
2차 정성적 (상대) 평가분야	소계		80	2차평가 (평가위원)	
	현장적용성 및 시공성	* 현장여건 및 적합정도	30		
		*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			
		* 공사기간의 적정성			
	안전성 및 내구성	* 구조적 안전성	30		
		* 내구·내진·내화·내습성 등			
		*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			
	유지관리	* 하자발생 가능성	10		
		* 유지관리의 용이성			
		* 생애주기 측면의 경제성			
	환경 및 경관성	* 향후 폐기물 발생 예상량 등	10		
		* 모양 등 디자인			
		* 외부마감 상태			
		*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			
감점		*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참여자	△10		
		* 기술제안서(정성평가) 작성지침 위반	△5		

II. 항목별 세부평가기준

1. 정량적 평가 (20점) : 절대평가

가. 경제성(공사비) 평가(10점)

구 분	배 점				
	90%미만	90%이상 ~ 95%미만	95%이상 ~ 100%미만	100%이상 ~ 105%미만	105%이상
점 수	10.0	9.0	8.0	7.0	6.0

- 공사비 비율 = (제안신기술·공법의 공사비 ÷ 제안신기술·공법의 평균공사비) × 100
 - 제안신기술·공법의 평균공사비는 최저가 및 최고가를 제외한 공사비의 평균으로 한다.(※ 제안신기술·공법의 공사비 건수가 5개 이하일 경우 모든 제안금액의 평균 적용)
- 해당공법의 공사비는 총괄(부가세 및 자재대 포함) 공사비를 말합니다.
 - 참여 업체는 공사비 산출에 있어서 부대공 및 가설장비, 가시설, 자재운반, 기타 비용등을 모두 반영하여 산출하며, 건설관련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공사비로 산정하여야 합니다.
- 참여업체는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함을 증명하는 산출내역서(설계내역서갑지, 내역서, 일위대가표, 단가산출서, 견적서 등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.
- 공사비 산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,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제품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,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.
- 향후 설계·공사 과정에서 제안 참여업체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.
※ 단,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관련법령 및 기준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
나. 경영상태 평가(10점)

-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,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평가등급은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(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)에 대한 신용평가등급(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,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‘신용평가등급확인서’)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.
- ‘신용평가등급확인서’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“0점” 으로 평가합니다.

신용평가등급			
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	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	③ 기업신용평가등급	점 수
A-이상	A2-이상	①의 A- 이상에 준하는 등급 이상	10.0
BBB+ ~ BBB-	A3+ ~ A3-	①의 BBB+ ~ BBB-에 준하는 등급	9.0
BB+ ~ BB-	B+ ~ B°	①의 BB+ ~ BB-에 준하는 등급	8.0
B+ ~ B-	B-	①의 B+ ~ B-에 준하는 등급	7.0
CCC+ 이하	C 이하	①의 CCC+ 이하에 준하는 등급 이하	6.0

2. 정성적 평가 (80점) : 상대평가

가. 평가방법

1) 정성적평가 등급별 배점 및 배분

- 정성적 평가 등급별 배점은 수(100%), 우(90%), 미(80%), 양(70%), 가(60%)

○ 정성적 평가 등급별 배분

업체수	등 급(배점)				
	수	우	미	양	가
2	1	1	-	-	-
3	1	1	1	-	-
4	1	2	1	-	-
5	1	2	1	1	-

2) 평가항목별 세부기준

평가항목	평가기준	평가등급 및 배점												
계	80점													
현장적용성 및 시공성 (3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현장여건 및 적합정도 *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* 공사기간의 적정성 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평가등급</th><th>수</th><th>우</th><th>미</th><th>양</th><th>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점 수</td><td>30</td><td>27.5</td><td>25</td><td>22.5</td><td>20</td></tr> </tbody> </table>	평가등급	수	우	미	양	가	점 수	30	27.5	25	22.5	20
평가등급	수	우	미	양	가									
점 수	30	27.5	25	22.5	20									
안전성 및 내구성 (3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구조적 안전성 * 내구·내진·내화·내습성 등 *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평가등급</th><th>수</th><th>우</th><th>미</th><th>양</th><th>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점 수</td><td>30</td><td>27.5</td><td>25</td><td>22.5</td><td>20</td></tr> </tbody> </table>	평가등급	수	우	미	양	가	점 수	30	27.5	25	22.5	20
평가등급	수	우	미	양	가									
점 수	30	27.5	25	22.5	20									
유지관리 (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하자발생 가능성 * 유지관리의 용이성 * 생애주기 측면의 경제성 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평가등급</th><th>수</th><th>우</th><th>미</th><th>양</th><th>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점 수</td><td>10</td><td>9</td><td>8</td><td>7</td><td>6</td></tr> </tbody> </table>	평가등급	수	우	미	양	가	점 수	10	9	8	7	6
평가등급	수	우	미	양	가									
점 수	10	9	8	7	6									
환경 및 경관성 (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향후 폐기물 발생 예상량 등 * 모양 등 디자인 * 외부마감 상태 *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평가등급</th><th>수</th><th>우</th><th>미</th><th>양</th><th>가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점 수</td><td>10</td><td>9</td><td>8</td><td>7</td><td>6</td></tr> </tbody> </table>	평가등급	수	우	미	양	가	점 수	10	9	8	7	6
평가등급	수	우	미	양	가									
점 수	10	9	8	7	6									

3. 감점사항

가.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참여자 감점(10점)

- 1) 공법선정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(협력업체 등)의 소속 임·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(접촉은 SNS, 문자, e-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)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합니다.
- 2)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(신고)된 경우 제안 업체는 발주처의 사실관계 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.

나. 기술제안서(정성평가) 작성지침 위반 감점(최대 5점)

- 공법명 및 업체명 등 식별가능한 표시를 명기하는 경우 1건당 1점 감점합니다.
- 기술제안서 감점은 평가 최종점수에서 최대 5점 이내로 감점합니다.